

# 중국 비전형 노동관계의 발전 및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황경진 (중국인민대학 경제학 박사)

## ■ 머리말

중국 노동시장에서 비전형 노동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중국 비전형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63.2%에 해당하는 2억 1,92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는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이 시행된 첫해인 1995년의 3,749만 명(19.7%)과 비교하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중국 노동시장에서 도급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형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노동관계법상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비전형 노동관계 가운데 현행 중국 노동관련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고용형식은 파견노동(劳务派遣)과 비전일제(非全日制) 노동자<sup>1)</sup>가 유일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비전형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유기업 등 공유제 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국가기관, 국유기업 등 공유제 부문에서는 엄격하게 편제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 비전일제 고용은 우리나라의 (현재히 짧은) 단시간 노동자와 유사한 고용형식으로 시간급 임금계산을 위주로 하고,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1일 4시간, 주당 누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형식을 말한다(노동계약법 제68조).

수요에 맞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형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민영부문에서는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및 해고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전형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이 파견노동을 느슨하게 규제함에 따라 중국 노동시장에서 파견노동자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파견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한 개정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이하에서는 중국 비전형 노동자의 개념, 규모 및 특징을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말에 발표된 ‘2012년 중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를 중심으로 중국 비전형 노동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공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 중국 비전형 고용의 발전배경

중국 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은 중국 고용형식의 변천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정부는 노동력 전원을 인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던 통포통배(统包统配)<sup>2)</sup>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중국경제의 시장화 개혁과정과 함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도급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비전형 고용은 기존의 고용관념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중국정부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종신고용제로 대표되는 고정공(固定工)의 형식으로 노동자를 채용했고, 그 외의 기타 고용형태는 모두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중국 비전형 고용의 발전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비전형 고용은 취업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발전했다. 1970년 말 1980년 초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비전형 고용이 대

2) 중국의 노동력관리 정책은 1956년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노동력 전원을 인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통포통배(统包统配)’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력, 특히 신규졸업자를 국가가 통일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업 및 단위로 분배하는 한편, 노동자의 이직 및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규모로 형성,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계획경제체제하의 중국 고용정책으로는 새롭게 증가하는 도시지역 신규 노동력과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농촌지역으로 하방되었다가 도시지역으로 돌아온 청년 지식인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된 ‘삼결합(三結合)’의 고용방침<sup>3)</sup>은 시대적 산물이었고, 도시로 돌아온 청년 지식인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모색했다. 동시에 농업생산책임제<sup>4)</sup>의 실시로 농촌지역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호구제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많은 농민공들이 도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 나왔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취업난이 이중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지역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형 고용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여타의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국의 비전형 고용의 형성과 발전은 취업난의 해소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개방의 산물이라는 특징이 가진다. 중국경제의 대외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허용되면서 중국에 외국기업들이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외국기업의 대표처는 법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중국 노동시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대표처는 정부관련부문이 지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기업을 통해서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특색을 가진 파견노동자가 외국기업의 대표처에 파견되면서 비전형 고용이 크게 발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비전형 고용은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 중국경제의 개방과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고용구조도 이에 따라 변화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경시되어 왔던 비생산부문인 금융

3) ‘삼결합 고용방침’이라 함은 국가의 통합관리계획과 지도하에서 노동행정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직업을 모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서로 결합한 고용방침을 말한다. ‘삼결합 고용방침’은 시장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진행되기 전에 시도한 시장화 고용확대 방침으로 중국 고용제도 시장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4) ‘농업생산책임제’란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1978년부터 실시된 청부형식의 생산책임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작업, 생산 및 경영을 개인, 가정, 그룹에 청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부제 형식이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하청 경영제도(家庭联产承包制)’이다.

업, 정보업, 유통업 등의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 3차산업의 고용은 그 특성상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도 있고, 다양화·개별화되어 가는 시장수요도 필요적으로 노동자를 다양화·유연화하는 고용형태를 필요로 해 비전형 고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 ■ 중국 비전형 고용의 개념

중국에서는 ‘비전형 고용’을 ‘비정규 취업(非正规就业, informal employment)’ 또는 ‘유연취업(灵活就业, flexible employment)’이라고 부른다.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전형 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비정규 취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차별성을 의식해서 ‘유연취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5)</sup>

중국 학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 취업(비전형 고용)’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토대로 중국 현실에 맞게 개념을 수정하였다. 중국에서 ‘비정규 취업(비전형 고용)’은 ‘비정규부문의 취업’과 ‘정규부문의 비정규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정규부문의 취업’은 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체(工商个体户)의 취업, ② 지역사회 내 개인사업체와 유사한 미등록 개인사업체의 취업, ③ 기타 파악할 수 없는 개인사업체의 취업, ④ 일용직 등 날품을 파는 취업 및 ⑤ 기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직의 취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규부문의 비정규(비표준) 취업’은 ①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단위,<sup>6)</sup> 기관, 사회단체 등의 취업으로 임시공, 계절공, 파견노동자, 시간공, 상품과 서비스 관측원, ②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 기관, 사회단체 등의 유연고용 방식의 취업으로 탄력적 노동자, 비전일제 노동자, ③ 변호사, 작가, 번역가 등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费平(2007), 「非正规就业问题研究」, 『中国劳动』2007年08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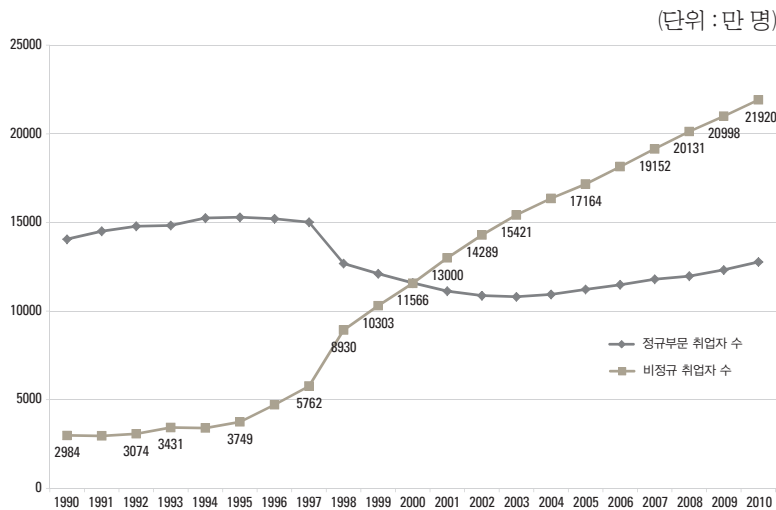
6) ‘사업(事业)’은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조직하고, 국가의 재정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상의 ‘비정규부문의 취업’과 ‘정규부문의 비정규 취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농민공, 둘째, 도시지역 국유기업, 집체기업에서 노동관계가 해지된 인원(예, 하강인원, 실업인원) 셋째, 기타 인원으로 프리랜서 등이다. 이 중 농민공의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하강, 실업인원이다.<sup>7)</sup>

## ■ 중국 비전형 고용의 규모

현재 중국정부는 농민공을 제외한 비전형 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중국 비전형 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중국 비전형 고용은 규모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비전형 노동자 수의 추이 변화(1990~2010년)



자료: 中国劳动关系学院经济管理系课题组(2013), 『中国非正规就业增长的新特点与对策』, 『经济纵横』2013年第1期.

7) 尉宇宏(2013), 『我国非正规就业劳动者权益保障法律分析』,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02期; 费平(2007), 『非正规就业问题研究』, 『中国劳动』2007年08期; 吴要武·蔡昉(2006), 『中国城镇非正规就业:规模与特征』, 『中国劳动经济学』2006年02期.

먼저, 비전형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2,984만 명에서 1997년 5,76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97년 이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2010년에 2억 1,920만 명으로 늘어나 비전형 노동자는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약 6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오히려 1990년 1억 4,057만 명에서 2010년 1억 2,76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1997~2002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다음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형 노동자가 중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비전형 노동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51%에서 2010년 63.19%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82.49%에서 36.81%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전형 노동자는 절대 규모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12년 중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2012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비전형 노동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공의 수는 2억 6,261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 983만 명(3.9%) 늘어났고,

<표 1> 중국 비정규 취업자의 비중 변화 추이(1990~2010년)

(단위 : %)

연도	비정규취업	정규취업	연도	비정규취업	정규취업
1990	17.51	82.49	1991	16.94	83.06
1992	17.21	82.79	1993	18.79	81.21
1994	18.25	81.75	1995	19.69	80.31
1996	23.64	76.36	1997	27.73	72.27
1998	41.31	58.69	1999	45.97	54.03
2000	49.96	50.04	2001	53.89	46.11
2002	56.80	43.20	2003	58.79	41.21
2004	59.93	40.07	2005	60.46	39.54
2006	61.24	38.76	2007	61.87	38.13
2008	62.71	37.29	2009	63.02	36.98
2010	63.19	36.81			

자료: 中国劳动关系学院经济管理学系课题组(2013), 「中国非正规就业增长的新特点与对策」, 『经济纵横』 2013年第1期.

〈표 2〉 농민공의 규모 변화 추이(2008~2012년)

(단위 : 만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농민공 수(A+B)	22,542	22,978	24,223	25,278	26,261
외출 농민공(A)	14,041	14,533	15,335	15,863	16,336
단신 외출 농민공	11,182	11,567	12,264	12,584	12,961
전 가족 외출 농민공	2,859	2,966	3,071	3,279	3,375
당해지역 농민공(B)	8,501	8,445	8,888	9,415	9,925

자료 : 201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

이 중 외출농민공<sup>8)</sup>은 1억 6,33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당해지역 농민공은 9,92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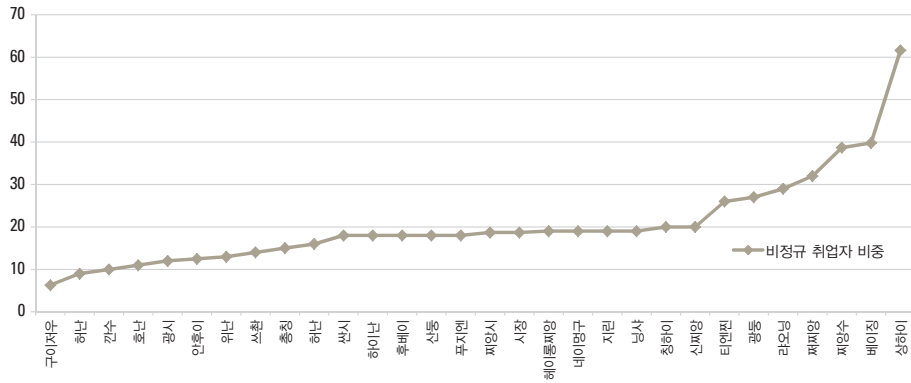
## ■ 중국 비전형 고용의 특징 및 현황<sup>9)</sup>

중국의 비전형 고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분포가 매우 불균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구이저우성(贵州省)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6.3%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상하이시(上海市)로 전체의 6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외출농민공(外出农民工)'은 고향지역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농촌노동력을 말한다. 외출농민공은 다시 '가족을 고향지역에 남겨둔 채 홀로 도시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住戶中外出农民工)'과 '가족과 함께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외출농민공(举家外出农民工)'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1억 2,961만 명, 3,3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이하의 통계자료는 刘军丽·燕晓飞(2012), 「我国非正规就业发展的现状与对策研究」, 『生产力研究』 NO.3; 中国劳动关系学院经济管理系课题组(2013), 「中国非正规就业增长的新特点与对策」, 『经济纵横』 2013年第1期; 剧宇宏(2013), 「我国非正规就业劳动者权益保障法律分析」,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年02期 등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림 2] 지역별 비전형 고용의 비중(2008년)



자료: 刘军丽·燕晓飞(2012), 「我国非正规就业发展的现状与对策研究」, 『生产力研究』 NO.3.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전형 고용은 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3차산업의 비전형 노동자 규모는 전체 3차산업 취업자의 70%에 근접해 있다. 즉 중국 비전형 노동자는 대부분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도소매업이 40.5%, 숙박요식업이 6.8%,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이 6.1%,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5.7%,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이 3.4%로, 이들 5개 업종이 비전형 노동자가 취업해 있는 주요 업종이다. 2차산업의 경우, 제조업이 22.2%이고, 건축업도 4.1%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민공은 제조업(35.7%)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 뒤를 건축업(18.4%), 서비스업

<표 3> 업종별 농민공의 비중(2008~2012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37.2	36.1	36.7	36.0	35.7
건축업	13.8	15.2	16.1	17.7	18.4
교통운수와 창고 및 우정업	6.4	6.8	6.9	6.6	6.6
도소매업	9.0	10.0	10.0	10.1	9.8
숙박요식업	5.5	6.0	6.0	5.3	5.2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	12.2	12.7	12.7	12.2	12.2

자료: 201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



(12.2%), 도소매업(9.8%), 교통운수와 창고 및 우정업(6.6%), 숙박요식업(5.2%) 등의 순이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변화가 가장 큰 업종은 건축업으로, 매년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공이 2008년 13.8%에서 2012년 18.4% 감소했으며, 제조업의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길며, 중노동에 속하는 농림수산업, 건축업, 지질탐사 및 수리관리업 등 3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채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요식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기타 업종에서는 비전형 노동자의 소득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기관, 당정기관과 사회단체, 사회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비전형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또한 전문기술을 가진 소수의 비전형 노동자를 제외한 절대 대다수의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당해지역 최저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sup>11)</sup>에 의하면, 2007년 상하이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평균임금은 각각 960위안(월), 2,892위안(월)이었는데,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은 최고 2,000위안이었고, 절대 대다수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하이시 사회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1,000위안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 상하이시 파견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업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의 50%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표 4 참조).

한편 2012년 농민공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표 5 참조), 소득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지난해보다 241위안 늘어난 2,290위안(월)으로 2012년 도시지역 사영기업 노동자 월평균임금 2,396위안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10) 任远·彭希哲(2007), 「2006年中国非正规就业发展报告」, 『劳动力市场的再观察』, 重庆出版社.

11) 刷宇宏(2013), 「我国非正规就业劳动者权益保障法律分析」,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年02期.

12)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2년 도시지역 사영기업 노동자의 연평균임금은 28,752위안으로 지난해보다 4,196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17\\_402897135.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17_402897135.htm)).

〈표 4〉 상하이의 업종별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연평균소득 비교(2010년)

	기업 수	정규직 임금 (元/年)	파견노동자 임금		
			파견노동자 임금(元/年)	격차	비중(%)
금융업	37	136,330	48,121	-88,209	35.3
과학연구업	12	127,082	62,526	-64,556	49.2
정보기술업	35	116,507	53,096	-63,411	45.6
수력발전업	31	69,060	26,085	-43,173	37.7
문화체육레저업	22	63,227	20,601	-42,626	32.6
수리환경업	10	55,815	27,215	-28,600	48.8
제조업	483	59,897	31,349	-28,558	52.3
건축업	35	63,298	37,227	-26,062	58.8
공공관리	108	71,702	50,920	-20,782	71.0
부동산	23	45,696	26,126	-19,570	57.2
교통운수업	70	49,596	32,083	-17,486	64.7
숙박요식업	31	38,685	22,587	-16,098	58.4
도소매업	91	34,008	28,257	-5,751	83.1
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업	45	22,875	25,633	+2,758	112.1
기타	137	54,040	27,644	-26,396	51.2
전 체	1,170	65,503	31,528	-33,975	48.1

자료 : 尉宇宏(2013), 「我国非正规就业劳动者权益保障法律分析」,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年02期.

〈표 5〉 농민공의 소득수준 변화 추이(2008~2012년)

(단위 : 위안)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340	1,417	1,690	2,049	2,290
동부	1,352	1,422	1,696	2,053	2,286
중부	1,275	1,350	1,632	2,006	2,257
서부	1,273	1,378	1,643	1,990	2,226

자료 : 201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

2,286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1.4%, 중부지역은 2,226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1.8%, 서부지역은 2,226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했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5,550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마지막으로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보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도시지역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정규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농민공을 포함한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비전형 노동자는 그동안 사회보험에서 배제해 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산하의 사회보험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비전형 노동자 가운데 30%만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총공회 연구실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육아보험 및 실업보험이 각각 16.3%p, 18.4%p, 16.4%p, 11.7%p 및 5.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2010, 2011년)

(단위 : %)

	정규직 노동자		파견노동자	
	2010	2011	2010	2011
양로보험(养老保险)	85.9	89.0	66.7	72.7
의료보험(医疗保险)	88.4	91.8	88.2	73.4
실업보험(失业保险)	76.4	65.3	57.7	60.2
산재보험(工伤保险)	78.8	86.9	72.9	70.5
육아보험(生育保险)	51.4	57.8	42.3	46.1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48.7	47.8	31.1	39.2

자료 : 李嘉娜(2012), 「我國不當勞務派遣的檢視與規制」, 『勞動經濟與勞動關係』第12期.

13) 201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

〈표 7〉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률(2008~2012년)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양로보험(养老保险)	9.8	7.6	9.5	13.9	14.3
의료보험(医疗保险)	21.1	21.8	21.4	23.6	24.0
실업보험(失业保险)	12.1	12.2	14.3	16.7	16.9
산재보험(工伤保险)	3.7	3.9	4.9	8.0	8.4
육아보험(生育保险)	2.0	2.4	2.9	5.6	6.1

자료 : 201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http://www.stats.gov.cn/tjfx/jdfx/t20130527_402899251.htm)

또한 지난 5월 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2년 중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2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따르면, 농민공의 5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양로보험(14.3%), 산재보험(24%), 의료보험(16.9%), 실업보험(8.4%) 및 육아보험(6.1%)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0.4%p, 0.4%p, 0.2%p, 0.4%p 및 0.5%p 증가했지만, 여전히 도시지역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전형 노동자의 임금,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등의 대우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법률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전형 고용은 중국 전체 노동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고용형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 노동관련 법률이 비전형 고용을 법률로 보호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형 노동자의 권리는 오랫동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이 비전형 고용 중 파견노동(劳务派遣)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규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노동계약법’이 파견노동의 허용업무를 모호하게 규정했고, 임금,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등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이 부족하여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파견노동자 수가 급증하였다. 중국정부는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두 차례 실시한 ‘노동계약법’ 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자, 중국사회에서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2012년 12월 ‘노동계약법’의 규정 중 파견노동과 관련된 4개의 조항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의 사용요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sup>14)</sup> **KLI**

14) 새로 개정된 ‘노동계약법’의 파견노동에 관한 내용은 2013년 1월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중국 파견 노동 고용제도 : ‘노동계약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를 참조하기 바란다.